

부속서 III

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

라오인민민주공화국

목록 가

주해

1. 이 목록은 제10.8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라,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.

가. 제10.3조(내국민 대우)

나. 제10.6조(이행요건 금지), 또는

다. 제10.7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
2. 이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 또는 분야들을 지칭한다.

나. **하위분야**는 유보된 특정 하위분야를 지칭한다.

다. **산업분류**는 다음에 따른 유보항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.

1) 제조업, 농업, 어업, 임업, 광업 및 채석업에 대한 국제표준산업분류 (ISIC) 제3판

2) 유보항목이 ISIC에 정확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,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그 유보항목의 적용범위를 명시한다.

라. **정부수준**은 기재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.

마. **관련의무**는 제10.8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라, 기재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.

마. **유보내용**은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. 그리고

사. **조치근거**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. 조치 근거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

1)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,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. 그리고

2)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,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 조치를 포함한다.

3. 제 10.8 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른 이 목록과 목록 나는 다음의 두 목록 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목록을 따른다.

가. 이 목록은 현행동결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역진방지 메커니즘의 적용 대상은 아닌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한 약속을 규정한다. 그리고

나. 목록 나는 분야, 하위분야 및 행위에서의 조치와 관련한 정책 유연성을 규정한다.

4.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이 목록에 규정된 것 외의 모든 비합치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. 다만, 그 비합치 조치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실행 중이어야 하며,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4 개월 내에 그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5. 유보항목을 해석할 때,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

6. 이러한 주해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일부를 구성한다.

| | | |
|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제 1 형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사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제 1 형 유해화학물질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건강, 생명, 재산 또는 환경에 반하는 위험에 대한 연구, 기술 개발, 보호 및 예방에 관련된 활동과 국방 및 공공 안전 활동에의 사용을 제외하고, 제 1 형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사업 활동을 금지한다. 다만, 그러한 활동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| 조치근거 | : | 화학물질관리법 제 10 조(제 07/NA 호, 2016 년 11 월 10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중앙은행 통화 발행 |
| 하위분야 | : | 지폐, 화폐 인쇄 잉크, 화폐 인쇄 기계 및 주화 제련 장비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「라오인민민주공화국 중앙은행법」에 따르면, 제 24 조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중앙은행이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폐와 주화(지폐, 화폐 인쇄 잉크, 화폐 인쇄 기계 및 주화 제련 장비 등을 포함한다)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. |
| 조치근거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중앙은행법 제 24 조(제 05/NA 호, 1999 년 10 월 14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제조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섬유의 직조 자수 |
| 산업분류 | : | ISIC 1312, 1321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<p>산업용 섬유 및 의류 제조를 제외하고, 고유한 민족적 디자인의 수제 섬유 직조에 대한 투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을 위하여 유보된다.</p> <p>산업용 섬유 및 의류 제조를 제외하고, 고유한 민족적 디자인의 수제 자수에 대한 투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을 위하여 유보된다.</p> |
| 조치근거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에 유보된 사업 유형 목록에 대한 고시(제 1328/MOIC.DERM 호, 2015 년 7 월 13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제조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그 밖의 목재 제품 제조 코르크, 짚 및 조물 재료의 제품 제조 |
| 산업분류 | : | ISIC 1629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영세 목재 가공 공장과 고유한 민족적 조각을 새긴 목각 및 지조세공품 제조 사업에 대한 투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을 위하여 유보된다. |
| 조치근거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에 유보된 사업 유형 목록에 대한 고시(제 1328/MOIC.DERM 호, 2015 년 7 월 13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제조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자기 및 도자 제품 제조 |
| 산업분류 | : | ISIC 2393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고유한 민족적 디자인의 현지 수공 자기 및 도자 제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을 위하여 유보된다. |
| 조치근거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에 유보된 사업 유형 목록에 대한 고시(제 1328/MOIC.DERM 호, 2015 년 7 월 13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제조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신변장식용품 및 관련 제품 제조 모조 신변장식용품 및 관련 제품 제조 |
| 산업분류 | : | ISIC 3211, 3212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고유한 민족적 디자인의 현지 수공예 신변장식용품 및 관련 제품 생산 사업에 대한 투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을 위하여 유보된다. |
| 조치근거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에 유보된 사업 유형 목록에 대한 고시(제 1328/MOIC.DERM 호, 2015 년 7 월 13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임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국유림의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이용 임업, 벌목 및 관련 활동 |
| 산업분류 | : | ISIC 0200, 0220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|
| 유보내용 | : | 국유림의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의 이용에 대한 투자는 국내 투자자를 위하여 유보된다. 임업, 벌목 및 관련 행위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의 특정한 승인의 적용 대상이다. |
| 조치근거 | : | 산림법 제 49 조(제 06/NA 호, 2007 년 12 월 24 일) 2007~2008 년 산림 관리 및 벌목 사업 규제 강화에 관한 총리령(제 30/PM 호, 2007 년 8 월 17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광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우라늄광과 토륨광(방사성 광물)의 채광 |
| 산업분류 | : | ISIC 0721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국익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탐사, 개발 계획 및 광업 운영에 대한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유보 지역을 정의하고 일부 광물 자원 구역을 보호한다. |
| 조치근거 | : | 광물법 제 10 조(제 02/NA 호, 2011 년 12 월 20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수산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상업적 관상용 수산업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양식, 번식, 증식 및 수입과 같은 상업적 관상용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개인이나 단체는 「투자촉진법」에 따라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| 조치근거 | : | 수산업법 제 31 조(제 03/NA 호, 2009 년 7 월 9 일) 투자촉진법(제 14/NA 호, 2016 년 11 월 17 일) |

| | | |
|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농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구아노(박쥐 배설물)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|
| 유보내용 | : | 구아노(박쥐 배설물)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내 투자자를 위하여 유보된다. |
| 조치근거 | : | 수출용 구아노 채취 금지에 관한 농림부장관령 (제 2050/MAF99 호, 1999 년 12 월 20 일)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의 구아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농림부장관령(제 613/MAF99 호, 2005 년 7 월 8 일) |

목록 나

주해

1. 이 목록은 제10.8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라,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.

가. 제10.3조(내국민 대우)

나. 제10.6조(이행요건 금지), 또는

다. 제10.7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
2. 이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 또는 분야들을 지칭한다.

나. **하위분야**는 유보된 특정 하위분야를 지칭한다.

다. **산업분류**는 다음에 따른 유보항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.

1) 제조업, 농업, 어업, 임업, 광업 및 채석업에 대한 국제표준산업분류 (ISIC) 제3판

2) 유보항목이 ISIC에 정확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,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그 유보항목의 적용범위를 명시한다.

라. **관련의무**는 제10.8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라,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.

마. **유보내용**은 유보항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. 그리고

바. **기존 조치**는 투명성 목적상 유보항목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조치에 대한 비열거적 목록을 적시한다.

3. 제 10.8 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른 목록 가와 이 목록은 다음의 두 목록 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목록을 따른다.

가. 목록 가는 현행동결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역진방지 메커니즘의 적용 대상은 아닌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한 약속을 규정한다. 그리고

나. 이 목록은 분야, 하위분야 및 행위에서의 조치와 관련한 정책 유연성을 규정한다.

4. 제 10.8 조(유보 및 비합치 조치)에 따라,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,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.

5. 유보항목을 해석할 때,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

6. 이러한 주해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일부를 구성한다.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모든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합작투자의 경우,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퍼센트를 출자할 것이 요구된다. ¹ |
| 기존 조치 | : | 투자촉진법 제 26 조부터 제 31 조까지(제 14/NA 호, 2016 년 11 월 17 일) |

¹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,

- 가. 완전한 국내투자 또는 외국소유투자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완전히 소유한 투자이며,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의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단일 투자자 또는 집단 투자자일 수 있다.
- 나. 계약에 의한 사업 협력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새로운 법적 실체나 지점을 설립할 필요 없이, 특정 기간 동안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업협력계약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 당사자를 포함하는 국내 및 외국의 법적 실체 간의 공동 사업 약정이다.
- 다.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 간의 합작투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며 새로운 실체를 설립하기 위한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다.
- 라. 공공-민간 파트너십 사업은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의 이행,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또는 대중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작투자 계약에 따른 공공 당국과 민간 당사자 간의 합작 투자이다.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양허 투자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양허 사업의 등록자본금은 총 자본금의 30 퍼센트 이상이다. 일반 사업의 경우, 등록자본은 기업법을 준수한다. |
| 기존 조치 | : | 투자촉진법 제 51 조 및 제 52 조(제 14/NA 호, 2016 년 11 월 17 일) 기업법(제 46/NA 호, 2013 년 12 월 26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모든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외국인 직원의 수는,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기술 전문가의 경우 기업 내 라오스인 직원의 총 수의 15 퍼센트, 정신 노동을 수행하는 기술 전문가의 경우 기업 내 라오스인 직원의 총 수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. 취업 허가는 노동복지부에서 취득할 수 있다. |
| 기존 조치 | : | 노동법 제 68 조(법률 제 43/NA 호, 2013 년 12 월 24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모든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<p>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은 그들의 투자 조건에 따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영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</p> <p>외국인 기술자와 전문가는 그들의 고용 계약에 따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영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</p> |
| 기존 조치 | : | 투자촉진법 제 70 조(제 14/NA 호, 2016 년 11 월 17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모든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투자 허가 기간 일반 사업: 관련 당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기간이 결정된 사업을 제외하고, 일반 사업에 대한 투자는 무제한의 투자 기간을 갖는다. 양허 투자: 양허 사업의 투자 기간은 관련 법과 규정을 근거로, 양허 활동의 유형, 규모, 투자액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. 그 기간은 55 년을 초과하지 않으나,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또는 지방 당국의 승인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. |
| 기존 조치 | : | 투자촉진법 제 40 조 및 제 42 조(제 14/NA 호, 2016 년 11 월 17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제조업 |
| 하위분야 | : |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료품 제조 |
| 산업분류 | : | ISIC 1079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 |
| 유보내용 | : | <p>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으로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.</p> <p>(a) 국내 투자자는 소유자로서 합작투자의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.</p> <p>(b) 합작투자의 등록자본금은 최소 10 억킵이어야 한다. 그리고</p> <p>(c)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투자의 총 지분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는다.</p> |
| 기존 조치 | : |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의 적용을 받는 사업 유형 목록에 관한 고시(제 1327/MOIC.DERM 호, 2015 년 7 월 13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제조업 |
| 하위분야 | : | 의약품, 약용 화학물질 및 식물성 제품의 제조 |
| 산업분류 | : | ISIC 2100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 |
| 유보내용 | : | <p>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으로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.</p> <p>(a) 국내 투자자는 소유자로서 합작투자의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.</p> <p>(b) 합작투자의 등록자본금은 최소 10 억킵이어야 한다. 그리고</p> <p>(c)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투자의 총 지분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는다.</p> |
| 기존 조치 | : |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건의 적용을 받는 사업 유형 목록에 관한 고시(제 1327/MOIC.DERM 호, 2015 년 7 월 13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농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및 지방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<p>정부의 토지 양허를 갖추고 농업 활동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, 관련 법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토지 및 프로젝트에 대한 일차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의 승인을 획득한다. 일차 데이터 수집을 완료한 후, 투자자는 권한 있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투자 승인을 획득하고, 라오인민민주공화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</p> <p>지방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에 대한 요청을 고려한다.</p> <p>(a) 150 헥타르 이하의 황폐한 임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. 리스 또는 양허 기간은 30 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함. 그리고</p> <p>(b) 500 헥타르 이하의 척박한 임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. 리스 또는 양허 기간은 30 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함.</p> <p>중앙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에 대한 요청을 고려한다.</p> <p>(a) 151 헥타르에서 15,000 헥타르 사이의 황폐한 임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. 리스 또는 양허 기간은 30 년을 초과하나 40 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함. 그리고</p> <p>(b) 501 헥타르에서 30,000 헥타르 사이의 척박한 임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. 리스 또는 양허 기간은 40 년을 초과하나 60 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함.</p> |
| 기존 조치 | : | 정부 토지의리스 또는 양허에 관한 법령 제 28 조 및 제 29 조(제 135/PM 호, 2009 년 5 월 25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농업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살충제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살충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시민에게 유보된다. |
| 기존 조치 | : | 살충제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(제 0886/MAF 호, 2000 년 3 월 10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수산업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「투자촉진법」에 따라 허가되고 등록되는 무역 및 유통을 위한 어류 및 그 밖의 수생 동물의 상업적 양식을 제외하고, 메콩강 및 그 지류와 저수지에서 수산물 포획 영업을 포함하는 수산업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|
| 기존 조치 | : | 수산업법 제 30 조(제 03/NA 호, 2009 년 7 월 9 일) 투자촉진법(제 14/NA 호, 2016 년 11 월 17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광업 |
| 하위분야 | : | 광업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<p>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발급하는 다음의 면허를 취득한다.</p> <p>(a) 탐사 및 탐험에 관한 면허</p> <p>(b) 개발 및 가공에 관한 면허</p> |
| 기존 조치 | : | 광업법 제 32 조(제 02/NA 호, 2011 년 12 월 20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광업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|
| 유보내용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투자가 생산한 상품을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특정 지역 시장 또는 세계 시장으로 독점 공급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그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|
| 기존 조치 | : | 광물법(제 02/NA 호, 2011 년 12 월 20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광업 |
| 하위분야 | : | 석유 및 천연가스 |
| 산업분류 | : | ISIC 0620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|
| 유보내용 | : |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가 취득되며 투자자와의 생산배분계약이 이용되어야 한다. |
| 기존 조치 | : | 광업법 제 32 조(제 02/NA 호, 2011 년 12 월 20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모든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|
| 유보내용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로열티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|
| 기존 조치 | : | - |

| | | |
|-------|---|---|
| 분야 | : | 모든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 |
| 유보내용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투자촉진법에 따른 사업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|
| 기존 조치 | : | 투자촉진법 제 9 조(제 14/NA 호, 2016 년 11 월 17 일) |

| | | |
|-------|---|--|
| 분야 | : | 모든 분야 |
| 하위분야 | : | - |
| 산업분류 | : | - |
| 정부수준 | : | 중앙 |
| 관련의무 | : | 내국민 대우(제 10.3 조) 이행요건 금지(제 10.6 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 10.7 조) |
| 유보내용 | : |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이 양허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분야 및 새로운 분야나 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 이 협정의 발효일에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판 3 에 분류된 모든 분야는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새로운 분야 또는 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 |
| 기존 조치 | : | |